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3차 회의 결과 보고

□ 개요

- (목적) 가상융합산업진흥법안 하위법령 및 임시기준 안내
- (일시/장소) '24. 8. 29.(목), 15:00~17:00/K-META 4층 회의실

□ 주요 내용

<주요내용>

- 가상융합산업진흥법안 하위법령 안내(송도영 변호사)
- 임시기준 제도 주요 안내(NIPA 최창범 팀장)
- 임시기준 수요발굴/절차 등 안내(서강대 김군주 교수)

- (참석자) 산·학·연·관 전문가 13명(기존 분과원 및 간사 9명/개방형 참여 4명)

구분	소속	성명	직급	비고	참석유무	
과과원 (8명)	학계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분과장/발제자	○
		서강대학교	김군주	교수	발제자/비대면	○
	산업계	네이버제트	한기규	리드		○
		웅진씽크빅	원만호	전무		×
		더픽트	전창대	대표		×
		애니펜	전재웅	대표		×
		브이리스브이알	권종수	대표		○
	연구계/ 기타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부연구원		×
		한국소비자원	오지영	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수석위원	비대면	○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비대면	○
	개방형 (4명)	산업계	모티버	황성원	대표	
아이앤에스원픽			이인환	대표		×
페이크아이즈			김석중	대표		○
올핌플래닛			황성하	PR담당	비대면	○
유관 기관		K-META	서영석	실장		○
			이명진	부장		○
간사	NIPA	최창범	팀장	발제자	○	
	K-META 정책기획실	주정현	차장		○	

※ 참석자 유형: 오프라인 9명/온라인 4명

□ 주요 내용

1)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내용(송도영 변호사)

○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시행령 제4조)

- 제4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의 대상) 법 제9조 1항 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직전 사업연도 가상융합 플랫폼 관련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

※ 기존 언급된 '거래액,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수' 삭제

○ 가상융합서비스 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시행규칙 제6조)

- 제6조(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매년 기존 서비스 등을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상품 등(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으로 전환한 기업들 중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이라 한다) 을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

○ 임시기준 검토(시행령 제14조 3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시기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에 신청인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임시기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 통보한다는 내용으로 구성

○ 임시기준 제안자(시행령 제14~16조, 시행규칙 제7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가상융합기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외에 개인(전문가 등), 협·단체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분쟁해결절차의 마련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후 추후 신설(시행령 19조 삭제)

2) 가상융합산업진흥법에 따른 '임시기준' 설명자료(NIPA 최창범 팀장)

○ 임시기준 필요성

- 임시기준 제도는 가상융합산업 발전을 위해 공통된 해석·기술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업자들의 의견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필요성을 1차로 검토한 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주무부처에 임시기준의 마련을 요구하는 제도

☞ 과기정통부가 공식 절차를 통해 주무부처에 임시기준의 마련을 요청하므로, 개별 사업자가 요청하는 것에 비해 실효성이 있음

○ 임시기준 정의 및 유형

- (정의)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출시·판매나 이용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그에 관한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임시로 마련한 기준(제2조제5호)

- (유형) 임시기준의 형태는 ▲가이드라인^①, ▲인허가 민원인안내서^②, ▲개발안내서^③, ▲유권해석·적극해석 등 다양하며, 형태를 한정하지 않음

☞ 주무부처의 판단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법령 정비에 바로 착수할 수도 있음(법령 정비의 動因으로서 역할)

3) 임시기준 분과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서강대학교 김군주 교수)

○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TF(임시기준 분과) 논의 결과

- 메타버스와 기존 산업 융합에 있어 산업계 의견이 반영된 임시기준 필요

※ 실효성 있는 임시기준 마련을 위한 산업계 의견 청취 필요

※ 토큰, 교육, 훈련, 지식재산권 등 주요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임시기준 필요 분야를 발굴하고, 분과회의를 통해 임시기준 마련

- 임시기준의 큰 방향성은 네거티브규제

※ 과도규제, 이중규제, 중복규제 등이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면 임시기준을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최소 규제 의 원칙’, ‘선 시장창출’,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조화’ 등을 주요원칙으로 진행
- 임시기준 마련 효율성을 위해 ‘23년 규제개선로드맵’ 작업결과 공유 후 임시기준 마련 필요 분야 의견취합
 - ※ 산업의 영향력과 중요도를 고려해 헬스케어 분야부터 시작
- 임시기준 관련 선례 2~3개 마련
 - ※ 법률의 적용 대상·범위가 불분명한 영역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선제적 제시

4) 주요 질의 사항

-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수석

- 질문1) 과거 ICT특별법에서 임시허가를 도입할 당시 법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나 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서 금지한 것이 아니므로 굳이 임시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임시기준의 경우에도 법령이 불명확할 경우 유권해석 요청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굳이 임시기준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 송도영 변호사 답변) 유권해석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밝히면서 특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음. 또한 유권해석의 범위가 명확하게 답을 해주지 않음. 유권해석한 사례의 사이트들 가보시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자세한 사항은 추가 검토하고 이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음. 유권해석의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예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신규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취지 하에서 만든 제도가 임시기준임.

- 질문2) 임시기준과 기술기준(고시) 또는 기술표준(TTA 등)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시기준이 마련되면 해당 기준이 기술기준 고시에서 규정된 기술기준이나 기술표준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송도영 변호사 답변) 임시기준은 해석에 관한 기준이며, 기술기준(고시)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서 마련하는 체계기 때문에 법령과 충돌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마련할 수는 없음. 가상융합산업 분야의 임시기준은 기술이 전무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영역이어서, 타영역의 임시기준이라면 기존 기준과 충돌 여지가 있을 수 있었지만, 가상융합산업분야에서는 지금은 그런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봄

- 올림플래닛 황성화 PR담당

- 질문) 제9조 조항 중 '연매출 1억 원 이상의 가상융합 플랫폼 운영 기업은 자발적으로 신고 필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Q1) 신고의 이유

※ 송도영 변호사 답변) 원래 법안 초안에는 가상융합사업자 신고를 받아서 신고한 그 가상융합 사업자에게는 조세 혜택을 주고자 하였는데, 도입이 무산됨. 그 과정에서 가상융합 플랫폼 기업이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니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신고임

Q2) 미신고 시 별도의 페널티가 있는지

※ 송도영 변호사 답변) 미신고시 페널티 없음

Q3) 신고하면 기업 차원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 송도영 변호사 답변) 기업 차원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황 조사를 토대로 정부에서 관련 정책 입안을 통해 추후 기업에게 혜택이 지원될 수 있음.

- 페이크아이즈 김석중 대표

- 질문) 임시기준에 대한 제안자가 개인도 해당되는지와 임시기준 통과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관련부처 거절/법충돌 이슈 등)

※ 송도영 변호사 답변) 임시기준 제안자는 개인도 가능함. 일단 법령상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30일 이내 답변을 드려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어서, 신청한 임시기준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보완하여 계속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네이버제트 한기규 리드

- 질문) 가상융합플랫폼 사업자가 다수의 플랫폼을 운영할 경우 신고의 기준은 각각의 플랫폼 매출액 기준인지? 아니면 전체 합계인지?

※ 송도영 변호사 답변) 신고서를 보시면 사실 사업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플랫폼별로 신고하는 거는 아닌 것으로 추정됨. 하나의 큰 플랫폼으로 갖고 개별적으로 개별 서비스가 입점하는 형태로 구상하기에 현재 규정으로는 사업자 중심으로 신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 브이리스브이알 권종수 대표

- 질문)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임시허가된 사업의 경우 부가조건으로 인해 사업 확대 측면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임시기준도 유사하지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음.

※ 송도영 변호사 답변) 규제샌드박스의 임시허가, 실증특례의 경우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반면, 임시기준의 경우 유사 사업들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 해석을 통해, 넓은 범위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남수 팀장(사전 질의)

- 질문) 지역메타버스 지원센터와 메타버스 허브의 중복되는 사업의 해결방안(인력양성 부분)과 메타버스 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사업수행 방식 및 예산의 변동 유무

※ 최창범 팀장 답변)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검토 중이며,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부 부처 예산 현황이라든지, 지원 형식에 따라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된 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차기 회의 계획

- 일시/장소 : 10월 18일 KMF 분과통합공개세미나 참여(양재 aT센터)
- 주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안 관련법령 및 임시기준 안내